

김천시의회 이상욱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「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6일

김 천 시 의 회 의 장



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기금 활용 사업과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(안 제5조)

나.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결정 (안 제10조2항)

다. 준용 (안 제20조)

3. 개 정 안 : 불 입

4. 발 의 자 : 이상욱 의원 외 16인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3. 11 . 22.(수)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(김천시의회홈페이지 '의회에 바란다'란)

다. 제출내용

-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의견
-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), 연락처
- 제출기관 : 김천시 의회사무국 의사팀
- 주소 : 우)39532 경북 김천시 시청1길 223
- 전화 : 054) 421 - 2940, 2943

의견 제출서

조례안 : 감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김천시 조례 제 호

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「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4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6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
<p>제10조(기금의 지원 신청 및 결정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<u>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0조(기금의 지원 신청 및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준용)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, 영 및 「<u>김천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20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「<u>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.</p>